

○ 85면 27번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의로 그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처분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13번시]

**해설** [개정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4. 예정된 보유 기간 5. 예정된 처분 시기 ○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개정상법 회사가 주주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한편, 회사가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개정법에 의하면 처분의 상대방에 따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 94면 48번

비상장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6번시]

**해설** 위 문제의 해설과 동일하게, 개정법에 의하면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 158면 128번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5번시]

**해설** 위 문제의 해설과 동일하게, 개정법에 의하면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 91면 ⑤번

⑤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해설** 최근에 자기주식의 소각의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제341조의4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여전히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 157면 126번

주식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15번시]

**해설** 최근에 자기주식의 소각의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제341조의4 참조). 다만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면 되고,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여전히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 158면 127번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상법」은 이를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번시]

**해설**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즉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제341조의2 제4호 참조). 최근에 자기주식의 소각의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여전히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제341조의4 참조).

▶정답 ×

○ 114면 ①번

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하여야 한다.

**해설** **[개정상법]**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제343조 제1항).

▶정답 ×

○ 115면 ④번

④ 주식소각의 효력은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때에 생기지만, 채권자의 이익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해설**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이하 해설은 동일함]